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기획감사실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 -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1. 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사유

상위법령인 「공직자윤리법」 일부 개정사항 (민간위원 증원) 및 상위법령과 조례 간 동일 용어 반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2조의 1항)

1)공직자윤리위원회는 **현행 5명**에서 **7명**으로 2명 증원

(민간위원을 **현행 3명**에서 **5명**으로 2명 증원)

2) 상위법령-조례 간 동일 용어 반영

: 민간위원 조건 ‘법관’에서 ‘판사, 검사, 변호사’로 변경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참조

4. 기타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 9. 17. ~ 10. 8. 기간 중 의견 없음

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바. 기타 관련사항 :

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,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, “법관”을 “판사, 검사, 변호사”로,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 단체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8조제6항”을 “법 제8조제7항”으로,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8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고령군 <u>기획조정실장</u>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기획감사실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기획감사실	
연 락 처	(054) 950 - 6042